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931
----------	-------

발의연월일 : 2025. 6. 18.

발 의 자 : 정일영 · 임광현 · 박해철
박지원 · 이병진 · 최민희
김교홍 · 김영환 · 이원택
서영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정부배당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훈령인 「정부배당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에서 배당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배당정책에 대한 결정은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배당협의체에 관한 사항이 훈령에 규정되어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세 수입 결손을 메우고자 과도한 배당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배당협의체의 협의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그 내용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정부배당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회의록 작성 및 공개의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6 신설 등).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6 다음의 “제4장의2 지식재산 관리·처분의 특례”를 삭제한다.

제65조의6부터 제65조의12까지를 각각 제65조의7부터 제65조의13까지로 하고, 제6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6(정부배당협의회) ① 총괄청은 정부배당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정부배당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정부의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
2. 총괄청 소관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수준에 관한 사항
3. 제65조의5제2항에 따른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정부배당 협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정부배당과 관련하여 총괄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2. 특별회계 및 기금 소관 중앙관서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3. 기업의 배당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으로서 3명 이상의 사람

④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정부배당대상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정부배당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의 수 및 성명
3. 협의·조정내용 및 결정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의7 다음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지식재산 관리·처분의 특례

제65조의9(중전의 제65조의8)제4항 전단 중 “제65조의11제1항”을 “제65조의12제1항”으로 한다.

제65조의12(중전의 제65조의11)제2항 단서 중 “제65조의8제4항”을 “제65조의9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65조의6(정부배당협의회) ① 총괄청은 정부배당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정부배당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u> <u>1. 정부의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u> <u>2. 총괄청 소관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수준에 관한 사항</u> <u>3. 제65조의5제2항에 따른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정부배당 협의에 관한 사항</u> <u>4. 그 밖에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정부배당과 관련하여 총괄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u> <u>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u>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u> <u>1.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u>

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2. 특별회계 및 기금 소관 중앙관서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3. 기업의 배당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으로서 3명 이상의 사람

④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정부배당대상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정부배당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의 수 및 성명

제65조의6(국회 보고 등) (생략)

제65조의7(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등) (생략)

제65조의8(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등의 방법) ① ~ ③ (생략)

④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등의 기간 동안 신청자 외에 사용허가등을 받으려는 자가 없거나 지식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하여만 사용허가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등의 방법은 제3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른다.

3. 협의·조정내용 및 결정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의7(국회 보고 등) (현행 제65조의6과 같음)

제65조의8(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등) (현행 제65조의7과 같음)

제65조의9(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등의 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제65조의12제1항-----

-----.

-----.

